HDPE 담합사실“ 공식시인"

93년1월부터 10%인상 시도 … 불황카르텔 추진도 불투명

지난 11월4일 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한 8개 HDPE 기업들은 HDPE 판매가격의 인상 등 독점규제 및 공동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했다.
이는 HDPE기업 담당자들이 92년12월14일 호남석유화학에서 영업부장 회의를 개최,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HDPE의 가격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93년1월부터 평균 10% 인상키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HDPE 가격인상 합의 및 시행사실을 지난 5월말 인지하고 조사한 착수한 결과 각 기업들은 위반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와같은 8개기업의 합의에 의한 HDPE 가격인상 행위는 내수거래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법제19조제1조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보면 8개기업은 각 기업들을 HDPE를 그레이드별로 A · B · C로 구분, 필름용의 경우 A등급은 톤당 55만5000원, B등급은 53만원, C등급은 51만5000원으로 책정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19조제1조1항을 보면 사업자는 계약 · 약정 · 결의 ·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같이 HDPE 기업들은 현재 HDPE 를 비롯한 합성수지 가격이 신 · 증설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가격이 폭락하자 가격담합이라는 미봉책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가격담합과 더불어 제19조제1조의 예외조항인 불황극복을 위한 불황카르텔을 병행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3/11/29>